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영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42

발의연월일: 2020. 6. 24.

발 의 자:김영주·서삼석·정청래

신동근 • 박광온 • 김철민

위성곤 · 김병기 · 전해철

김승남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문화산업전문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산업전문회사·사업관리자·자산관리자에게 이 법에 따른 업무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문화산업전문회사 등에 자료 제출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가 추상적·포괄적이어서 국민권익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고, 감독 및 검사에 따른 업무를 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55조제1항 및 제2항).

법률 제 호

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공무원"을 "공무원 또는 제58조에 따른 위탁기관"으로 한다.

-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산업전문회사·사업관리자·자산관리자에게 이 법에 따른 업무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
- 1. 이 법에 따른 등록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2.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
- 3. 제56조에 따른 등록 취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4. 그 밖에 문화산업 관련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혂 행

제55조(감독・검사 등) ①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전 문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산업전문회사 · 사업관리자 ·자산관리자에게 이 법에 따ㅣ 른 업무 등에 관한 자료의 제 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 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산업전문회사 · 사업관리자 · 자 산관리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 른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검

개 정 안

제55조(감독・검사 등) ①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산업전문회사 · 사업관리자 ·자산관리자에게 이 법에 따 른 업무 등에 관한 자료의 제 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 다.

- 1. 이 법에 따른 등록 등의 업 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
- 2.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민원 등 이 발생한 경우
- 3. 제56조에 따른 등록 취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4. 그 밖에 문화산업 관련 정 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
- (<u>2</u>) ----
-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문화 공무원 또는 제58조에 따른 위탁기관----

사하게 할 수 있다.	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